

(제156회-본회의 제2차부록)

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974
--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3. 4.
제 출 자 : 중구청장

1. 개정이유

「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가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따른 “공영주차장 관리 · 운영”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관리 대상자의 투명성 확보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을 감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「주차장 관리 · 운영 위탁」을 위해 공단 위임 근거 마련
 -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공사 · 공단(안 제5조제1항제1호)
- 나. 위탁 관리 대상자의 투명성 확보와 조문의 불명확한 내용을 정비
 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(안 제5조제1항제2호)
- 다. 주차장 관리 비용이 과다 지출되어 수탁관리가 어려운 주차장의 효율적 수탁관리를 위하여 비영리 공익단체에게 수탁관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(안 제5조제2항)
- 라.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% 감면. 다만, 월주차의 경우에는 경감하지 않는다.(안 제6조제4항제10호)

3. 근거법규

- 가. 「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9조
- 나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 및 제76조
- 다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
- 라.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
- 마.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

4.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: “따로 붙임”

5. 참고사항

- 가. 예산조치 사항 : 해당없음
- 나. 규제사무 심의 : 해당없음
- 다. 성별영향분석 평가 : 원안동의
- 라. 입법예고 : 2013. 2. 12. ~ 2013. 3. 4.(의견 없었음)

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공사·공단
2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에 따른

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

제5조제2항 표의 구분란 중 “공익법인”을 “공익법인 및 단체”로 하고, 납부하여야 할 금액란에 “상당액”을 “상당액 및 평가액”으로 한다.

제6조제4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10.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 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. 다만, 월주차의 경우에는 경감하지 않는다.

부칙

-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제156회-본 회의 제2차부록)

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5조(공영주차장의 관리 등) ① (생략)</p> <p>1. 울산광역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</p> <p>2. 공공시설물의 관리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</p> <p>3.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 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.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<th>선정방법</th><th>납부하여야 할 금액</th><th>납부방법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제1항제1호의 경우</td><td>구청장이 정하는 방법</td><td>구청장이 정하는 금액</td><td>구청장이 정하는 방법</td></tr> <tr> <td>제1항제1호 이외의 비영리 공익법인</td><td>수의계약</td><td>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 점용료 또는 공유재산 대부료 <u>상당액</u></td><td>3개월 단위로 선납</td></tr> <tr> <td>기타의 경우</td><td>경쟁계약</td><td>입찰가격</td><td>3개월 단위로 선납</td></tr> </tbody> </table> <p>제6조(주차요금등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 <p>1. ~ 9. (생략) 〈신 설〉</p> <p>⑤ (생략)</p>	구 분	선정방법	납부하여야 할 금액	납부방법	제1항제1호의 경우	구청장이 정하는 방법	구청장이 정하는 금액	구청장이 정하는 방법	제1항제1호 이외의 비영리 공익법인	수의계약	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 점용료 또는 공유재산 대부료 <u>상당액</u>	3개월 단위로 선납	기타의 경우	경쟁계약	입찰가격	3개월 단위로 선납	<p>제5조(공영주차장의 관리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공사·공단</p> <p>2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자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<th>선정방법</th><th>납부하여야 할 금액</th><th>납부방법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제1항제1호의 경우</td><td>(현행과 같음)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 <td>제1항제1호 이외의 비영리 공익법인 및 단체</td><td>수의계약</td><td>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 점용료 또는 공유재산 대부료 <u>상당액 및 평가액</u></td><td>3개월 단위로 선납</td></tr> <tr> <td>기타의 경우</td><td>(현행과 같음)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/tbody> </table> <p>제6조(주차요금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해 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. 다만, 월주차의 경우에는 경감하지 않는다.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	구 분	선정방법	납부하여야 할 금액	납부방법	제1항제1호의 경우	(현행과 같음)			제1항제1호 이외의 비영리 공익법인 및 단체	수의계약	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 점용료 또는 공유재산 대부료 <u>상당액 및 평가액</u>	3개월 단위로 선납	기타의 경우	(현행과 같음)		
구 분	선정방법	납부하여야 할 금액	납부방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1항제1호의 경우	구청장이 정하는 방법	구청장이 정하는 금액	구청장이 정하는 방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1항제1호 이외의 비영리 공익법인	수의계약	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 점용료 또는 공유재산 대부료 <u>상당액</u>	3개월 단위로 선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타의 경우	경쟁계약	입찰가격	3개월 단위로 선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선정방법	납부하여야 할 금액	납부방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1항제1호의 경우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1항제1호 이외의 비영리 공익법인 및 단체	수의계약	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 점용료 또는 공유재산 대부료 <u>상당액 및 평가액</u>	3개월 단위로 선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타의 경우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의안심사보고서

(의안번호 974)

1. 의안명 :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심사경과

- 제출연월일 : 2013. 4. 3.(수)
-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위원회회부 : 2013. 4. 4.(목)
- 위원회심사 : 2013. 4. 15.(월)

3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건설도시국장)

가. 제안이유

「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가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따른 “공영주차장 관리·운영”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관리 대상자의 투명성 확보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을 감면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「주차장 관리·운영 위탁」을 위해 공단 위임 근거 마련
(안 제5조제1항제1호)
- 위탁 관리 대상자의 투명성 확보와 조문의 불명확한 내용을 정비
(안 제5조제1항제2호)
- 주차장 관리 비용이 과다 지출되어 수탁관리가 어려운 주차장의 효율적 수탁관리를 위하여 비영리 공익단체에게 수탁관리 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5조제2항)
-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% 감면. 다만, 월주차의 경우에는 경감하지 않는다.(안 제6조제4항제10호)

4. 근거법령

- 「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9조
-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 및 제76조
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
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
-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

5. 검토보고(전문위원 김권수)

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따른 “공영주차장 관리·운영”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관리 대상자의 투명성 확보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그 취지에 별다른 이견이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